이효원 의원(국민의힘, 비례)

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이효원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현재 문화재 체제에서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문화재 등의 용어가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개편하는 내용의 「국가유산기본법」,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 및 개정되어 24년 5월 17일 시행 예정입니다.

□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를 상위법 제·개정에 맞추어 '문화재'를 '국가유산'등의 용어로 변경할 필요

성이 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